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20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2. 6.

발의자 : 안민석 · 김민기 · 이상현

이동섭 · 정세균 · 유성엽

박범계 · 김철민 · 윤영일

노웅래 · 이찬열 · 김병욱

인재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함)을 수립·추진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종합계획,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·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, 해당 연도 시행계획,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자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,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(안 제46조의3 신

설 등).
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”를 “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”로 한다.

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

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3(국회 보고)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,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회 보고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

후 최초로 수립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5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서관위원회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④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-----.</u></p>
	<p><u>제46조의3(국회 보고)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,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